# (권익위원회) 청탁금지법 관련 1차 FAQ

〈부정청탁을 받은 제3자가 직무수행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제재 여부〉

Q-1.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 요청을 받은 제3자는 제재를 받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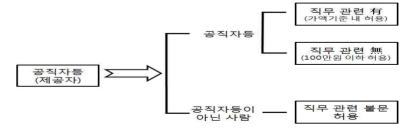
- 법 제5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"**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"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**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부정청탁의 요청을 받은 제3자가 **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동** 에게 부정청탁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.

〈공직자등이 민간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허용 여부〉

- Q-2. 공무원, 교사, 언론사 임직원 등 공직자등이 ① 민간인, ② 직무와 관련 없는 다른 공직자등, ③ 직무와 관련이 있는 다른 공 직자등에게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줄수 있는지?
- 공직자등은 **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**에게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.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나, 공직자등이 아닌 **민간인이 금품등을 받는 행위는 제한 하고 있지 않기** 때문입니다.
- 공직자등은 **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**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<u>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</u>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 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액기준 범위 내에서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를 줄 수 있도록 <u>제한됩니다.</u>

#### ※ 예시

- ◆ A대학 경영대학원장이 학교발전기금의 유치·홍보를 위해 대기업 이사 에게 5만원 초과 선물을 제공(적법)
- ◆ 언론사 기자가 취재원(기업 직원)과 3만원 초과의 식사를 하고 언론사 기자가 계산한 경우(적법)



#### <공직자등과 민간인이 혼재된 모임에서 식사>

Q-3.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함께 가액 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후 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와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이 계산한 경우

- (공직자등이 계산한 경우) 공직자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 - 또한, 공직자등은 **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등에게**도 **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**할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공직자등은 <u>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</u>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**가액기준 범위 내에서**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.
- (민간인이 계산한 경우) 공직자등은 **직무와 관련이 없는** 민간인 으로부터는 **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**받을 수 있습니다.
  - 다만, 공직자등은 **직무와 관련이 있는 민간인으로부터**는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<u>가액기준 범위 내의</u> 식사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〈공직자등의 경조사에 찾아온 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〉

- Q-4. 공직자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 이하의 경조 사비를 받고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요?
-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,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하더라도 법 제8조제 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.

## <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·하급자 사이의 식사>

Q-5.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?

- **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**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**직무**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.
- 부서 내 **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**하는 경우 **직무관련성이 인정**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,
  - 다만, 인사,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, 의례 등의 목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<u>가액기준 내의 식</u> 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.
-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·격려·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허용됩니다.

#### <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·축제 협찬>

Q-6.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·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,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?

- 협찬이 **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**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.
- 먼저,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되고,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.
- 다음, <u>실체적 요건으로</u>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<u>대가관계(반대급부)가 존재해야</u> 합니다.

# <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 금지규정 비적용 범위>

Q-7. 행정기관위원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기업인, 변호사 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(법 제8조)이 적용되나요?

- 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(공무) 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이 **적용되지 않습니다**.
  - 다만, <u>자신이 맡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, 즉 '공무수행에 관하여'</u>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.
-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경우도 자신이 위원으로 맡고 있는 **공무** (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)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 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- 그밖에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(법 제10조)도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## 〈위원회의 통상적 회의 종료 후 식사 가능 범위〉

Q-8. 건축심의위원회·도시계획위원회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 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건축사·변호사 등의 민간 위원과 함께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식사를 할 수 있나요?

- 통상적 회의가 끝난 후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 위원(공무수행사인) 에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<u>3만원 이내의 식사를</u>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·취임,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·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## <이사회 등 구성원에 대한 식사 가능 범위>

Q-9.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?

-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의 임직원으로 **해당 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**합니다.
- **법 제8조제3항제1호**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.
  -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**내부** 기준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합니다.

# <각자내기(더치페이)로 허용되는 식사 가능 범위>

Q-10. 청탁금지법 상 각자내기(더치페이)로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 지인가요?

-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<u>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등이</u>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됩니다.
- 또한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**바로 이어진**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**같은 수준**으로 낸 경우 **가액기준을 초과하여**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## <가액기준(5만원)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>

Q-11. 청탁금지법 상 가액기준(5만원)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

- 경조사 등 기념일에 **참석한 하객**인 공직자등에게 <u>일률적으로 제공</u> 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허용됩니다.
- 은행, 증권사 등 금융기관, 백화점, 마트 등에서 **거래실적에 따라**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나 공직자등이 배우자가 **재직 중인 회사로부터**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.

# 〈경조사비 허용 가능 범위〉

Q-12. 공공기관 내부에서의 경조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수수해야 하나요?

- 공공기관 내부 <u>직무관련이 없는 직원끼리</u>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됩니다.
- **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**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 · 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도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,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, 인위적 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 정,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 기에도 가액기준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.

#### <취재기자 편의제공 가능 범위>

Q-13. 공식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교통편의·식사를 제공해도 되나요?

- **공식적인 행사**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.
  - 따라서 공직적 행사를 취재하는 기자단이나 행사 관련 임직원에게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행사진행 지원과 행사 홍보를 위한 취재 지원을 위해 교통편의 ·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 -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일률적 제공에 해당되지 않으나, <u>참석자 중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하는 것은 일률적 제공에 해당될</u> 수 있습니다.

## <외부강의>

Q-14.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·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에 포함되나요?

○ 연구회, 전시회에서 <u>연주·공연,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</u>, 의견 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<u>외부</u> 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-15. 공청회, 간담회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공청회,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의견,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<u>외부강의등에</u> 해당합니다.

Q-16. 공직자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
○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,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·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,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<u>외부강의등에 해당</u> 하지 않습니다.

- Q-17. 법령(조례·규칙을 포함)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 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?
-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·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Q-18.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?

-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, 법 제10조에서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.
  - 다만,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Q-19.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, 숙박비, 교통비를 제공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?

○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내에서 <u>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</u>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# <외국정부의 국제교류 증진 등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>

Q-20.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, 대학교수,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(외국정부 비용부담)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?

○ 외국정부, 국제기구,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·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중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, 교통, 숙박, 음식물,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.